공고 제 9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청라3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	정 * 1991-04-24	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 (청라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10